

## 농업

### 관세율할당 (TRQ) (제2장 부록 2-나-1, 제3.2조)

- ▣ 관세율할당(TRQ: Tariff Rate Quota) : 일정 물량까지는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하고, 그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량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제도

  - 우리측은 탈·전지 분유 및 연유, 오렌지 등 19개 품목 대상
  - 미측은 낙농품 대상
    - ※ 대상품목(19개 품목) : 납치류, 명태, 민어, 탈·전지분유 및 연유, 식용유장, 버터, 치즈, 천연꿀, 감자(칩용 및 종자용 외), 오렌지, 보리(맥주맥 및 시리얼용 외), 맥아 및 맥주맥, 옥수수 전분, 식용대두, 사료용 근채류, 인삼, 조제분유, 보조사료, 텍스트린
    - ※ 미측 대상품목 : 낙농품
  
- ▣ 협정 부록 2-나-1에 규정된 품목들(19개 품목)의 TRQ 관리방식으로 우리측은 선착순·수입권 공매·허가제도를 통한 수입권 배분 등 다양한 관리방식 도입(미측은 선착순 방식 도입)

  - ※ 우리측은 TRQ 수입자 결정,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「한·미 FTA에 따른 TRQ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(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2-32호, 2012.3.12)」으로 정하여 운영

##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(제3.3조, 부속서 3-가)

-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: 쇠고기, 돼지고기, 인삼 등 30개 품목에 대해 수입이 일정 물량 이상으로 급증하는 경우, 관세를 추가 부과하여 국내 시장을 보호
  - ※ 대상품목(30개 품목) : 쇠고기, 돼지고기, 양파, 마늘, 고추, 콩류, 고구마, 기타 뿌리 및 괴경류, 사과, 녹차, 생강, 맥아 및 맥주맥, 보리, 팥콩, 옥수수(기타), 메밀, 곡류·곡물의 분쇄물·가공곡물, 감자의 분·조분·분말 등, 옥수수 전분, 감자 전분, 매니옥 전분, 고구마 전분, 기타 전분, 낙화생, 참깨, 인삼, 참기름, 설탕, 주정, 덱스트린
- 후지사과, 고추, 마늘, 양파, 생강, 인삼, 참깨, 참기름 등 주요 품목은 관세철폐 후에도 일정 기간(2-3년간) 농산물 셰이프가드 유지
- 제3장에 의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제10장(무역구제)에 따른 긴급수입제한조치, 또는 1994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상의 조치와 동시 적용 또는 유지 불가
- 협정에 따른 원산지 농산물은 WTO 농업협정 상의 농업긴급 수입제한조치에 따른 관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.

## 농산물무역위원회 (제3.4조)

- 설치 및 구성
  - 협정 발효후 90일 이내 설치
  - 각 당사국 대표로 구성
- 기능
  - 협정 제3장의 이행 및 운영 점검 및 관련 협력 증진

- 협정에 따른 여타 위원회 등과 협정 제3장 관련 사안에 대해 협의
- 공동위원회가 부여하는 추가 업무 수행

□ 회합

-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, 매년 최소 1회

### 양측 농산물 양허협상 결과

(단위 : 억불, %)

단계	우리나라 농산물				미국 농산물			
	품목수	비중	수입액	비중	품목수	비중	수입액	비중
즉시	578	37.8	16.5	55.3	1,065	58.7	1.8	82.0
2~3년	39	2.5	0.07	0.2	10	0.6	0	0.1
5년	337	22.0	3.6	11.9	401	22.1	0.05	2.0
6~7년	44	2.9	1.2	4.1	92	5.1	0.3	13.8
9~10년	344	22.5	1.4	4.7	180	9.9	0.05	2.0
10년초과	157	10.2	4.7	15.7	65	3.6	0	0.0
계절/현행관세	16	1.0	2.1	7.2	-	-	-	-
제외	16	1.0	0.26	0.9	-	-	-	-
합계	1,531	100	29.8	100	1,813	100	2.2	100

※ 수입액 : 2003-2005년 3개년 평균

### 우리측 농산물 양허협상 결과

#### (1) 농산물 양허 개요

- 국내 영향이 미미하거나 이미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관세를 즉시 철폐
  - 즉시철폐율 : 농산물 전체 품목수 기준 37.8%, 수입액 기준 55.3%
- 민감도가 낮은 품목은 즉시철폐에서 10년까지 철폐기간을 차별화하여 양허
-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제외, 관세율할당, 현행관세 유지, 계절관세 도입, 세번 분리,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예외적 취급 및 15년 이상의 장기 관세철폐기간을 확보

## (2) 예외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

- (양허제외) 쌀 및 쌀 관련 제품(벼, 메현미, 찰현미, 멥쌀, 찹쌀, 쉐미, 쌀가루 등 16개 세번)은 완전 제외(양허표상 양허단계:Y)
- (현행관세 유지, TRQ)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관세율이 높아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경우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, 일정량의 TRQ 제공
  - 식용대두, 감자(칩용 및 종자용 제외), 탈전지분유 및 연유, 천연꿀(부록 2-나-1에 규정된 품목 중 양허단계 X)
- (계절관세) 민감품목 중 수확·유통 기간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는 품목은 우리나라 수확·유통 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호
  - 칩용감자(양허단계 U)
    - (5.1~11.30) 이행 1년차부터 7년차까지 기준관세율(304%) 유지한 후, 이행 8년차부터 8단계에 걸쳐 균등 철폐
    - (12.1~4.30) 즉시철폐

■ 포도(양허단계 V)

- (5.1~10.15) 17년 균등철폐
- (10.16~4.30) 협정 발효일에 24%로 인하된 후, 이행 2년차부터 4단계에 걸쳐 균등 철폐

■ 오렌지(양허단계 W)

- (9.1~2월말일) 기준관세율(50%) 유지
- (3.1~8.31) 협정 발효일에 30%로 인하된 후, 이행 2년차부터 6단계에 걸쳐 균등 철폐

※ 오렌지는 계절관세와 함께 TRQ 대상

▣ (세번 분리) 양국의 주력 품종이나 용도가 구분되는 경우,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부분을 집중 보호

■ 사과(HSK 0808100000)

- 후지는 20년간 관세철폐(23년 세이프가드)
-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(10년 세이프가드)

■ 배(HSK 0808201000)

- 동양배 품종은 20년간
-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

■ 감자(HSK 0701900000)

- 칩용 감자는 계절관세(즉시 철폐 또는 15년간 관세철폐)
- 기타 감자는 현행관세 유지(TRQ 포함)

■ 대두(HSK 1201009000)

- 대두(장류박용, 간장원료)는 즉시철폐
- 기타 대두는 현행관세 유지(TRQ 포함)

## 〈 우리측 농산물 양허 개요 〉

(단위: %, 천불)

양허 유형	품목수	비중	수입액	비중	주요 품목
양허제외	16	1.0	25,555	0.9	쌀 및 쌀 관련 제품
현행+TRQ	14	0.9	90,926	3.0	식용대두, 식용감자, 탈·전지분유 및 연유, 천연꿀
17년, 계절관세	1	0.1	4,099	0.1	포도
15년, 계절관세	0(1)	0.1	0	0.0	칩용 감자
7년, 계절관세+TRQ	1	0.1	118,409	4.0	오렌지
18년+TRQ	4	0.3	1	0.0	인삼(수삼, 백삼의 본삼, 미삼, 잡삼)
15년+TRQ	10	0.7	93,503	3.1	치즈, 보리, 맥아 및 맥주맥, 옥수수전분, 사료용 식물
12년+TRQ	6	0.4	8,369	0.3	보조사료, 텍스트린
10년+TRQ	11(1)	0.8	17,224 (체다 제외)	0.6	버터, 조제분유(유아용), 유장(식용), 체다치즈
20년	0(2)	0.1	0	0.0	사과(후지), 배(동양배)
18년	3	0.2	0	0.0	홍삼(본삼·미삼·잡삼)
16년	2	0.1	1,058	0.0	설탕
15년	98(2)	6.5	353,259	11.8	육우, 쇠고기, 계란, 녹용, 녹각, 고추, 마늘, 양파, 생강, 표고버섯, 키위, 호두(미탈각), 감귤, 녹차, 밤, 잣, 참깨, 참기름, 주정, 전분, 혼합조미료 등
12년	34	2.2	13,504	0.5	젓소, 닭고기(냉동가슴살, 냉동날개), 난황(건조, 기타), 냉동양파, 수박, 멜론 등

양허 유형	품목수	비중	수입액	비중	주요 품목
10년	332	21.7	122,792	4.1	산 돼지, 복숭아, 감, 단감, 감귤주스, 사과주스(브릭스 20 이내), 앞담배, 자두, 로얄젤리, 인조꿀, 닭다리(냉동), 돼지고기(냉장 삼겹살, 목살, 갈비 등), 고구마, 사과(후지 제외), 배(동양배 제외), 찐쌀, 쌀의 배아, 송이, 느타리, 팥이, 영지버섯 등
9년	1	0.1	0	0.0	신선딸기
7년	41	2.7	59,292	2.0	맥주, 아이스크림, 살구, 팝콘용 옥수수, 옥수수(가공용), 포도(조제저장처리), 사과(조제저장처리), 사과주스(브릭스 20 초과) 등
6년	2	0.1	13,070	0.4	옥수수유(기타), 호두(탈각)
5년	317(2)	20.7	347,007	11.6	오렌지주스(냉장), 토마토주스, 크랜베리 주스, 자두주스, 완두콩, 감자(냉동), 위스키, 스파게티, 국수, 당면, 냉면, 인스턴트 커피, 간장, 고추장 등
2016.1.1까지	1	0.1	49,984	1.7	냉동 기타 돼지고기(목살, 갈비살 등)
2014.1.1까지	20	1.3	7,705	0.3	돼지고기(냉장 도체 및 이분도체, 냉장 전, 후지, 냉동육, 설육, 가공품)
3년	33	2.2	65	0.0	해조류 등
2년	6	0.4	6,920	0.2	아보카도, 레몬, 프룬(건조 자두), 콜라베이스 등
즉시 철폐	578(9)	37.8	1,650,575	55.3	오렌지주스(냉동), 포도주스, 산동물, 종축, 원피, 면화, 마 등 섬유 원료, 화훼류, 커피, 포도주, 밀, 사료용 옥수수, 대두(채유용, 장류제조용), 사료용 완두, 사료용 유장 등
계	1,531(17)	100	2,983,317	100	

\* ( ) 안 품목은 세번분리된 품목, 수입액 : 2003-2005년 3개년 평균

## (3) 주요 품목별 양허 내용

## 가. 식량작물

품 목	양허내용
쌀	○ 쌀 및 쌀 관련 16개 세번은 양허 제외
대두	○ 장유박용 및 간장원료 세번 분리, 식용대두의 경우 현행관세(487%) 유지 조건으로 TRQ 제공 - 장유박용 및 간장원료 : 즉시철폐 - 식용대두 : 현행관세 유지, TRQ 제공(1차년도 10천톤, 2차년도 20천톤, 3차년도 25천톤(이후 매년 복리3% 증량))
감자·감자분	○ 식용감자는 현행관세(30.4%) 유지를 조건으로 TRQ 제공, 칩용감자는 별도로 세번을 분리하여 계절관세를 적용 - 식용 : 현행관세 유지, TRQ 제공(1차년도 3천톤(이후 매년 복리 3% 증량)) - 칩용 : 계절관세(12~4월: 즉시 / 5~11월: 7년 유예 후 8년간 균등 철폐) ○ 감자분(기준세율 30.4%) : 10년 철폐,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10년간 적용 - 동 기간 동안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기준 이하의 수입량은 무관세 적용 (1차년도 5천톤, 이후 매년 복리3% 증량)
보리	○ 15년 철폐, TRQ 제공 및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- 겉보리(기준세율 32.4%) + 쌀보리(기준세율 29.7%) : 14년간 TRQ 적용(1차년도 물량 2,500톤, 이후 매년 복리2% 증량), 15년간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- 맥아(기준세율 26.9%) + 맥주맥(기준세율 51.3%) : 14년간 TRQ 적용(1차년도 물량 9,000톤, 이후 매년 복리2% 증량), 15년간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
옥수수	○ 7년 철폐, 7년간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- 옥수수팝콘(기준세율 63.0%) : 7년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기준 이하(1~4년차는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기준, 5~7년차는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물량)의 수입량은 무관세 적용 * 1차년도 5,122톤(2,556톤), 2차년도 6,390톤(3,994톤), 3차년도 7,668톤(5,751톤), 4차년도 8,946톤(7,828톤), 5차년도 10,224톤, 6차년도 10,735톤, 7차년도 11,246톤 ※ 괄호안은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기준



품 목	양 허 내 용
옥수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옥수수기타(기준세율 328%) : 7년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기준 이하(1~4년차는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기준, 5~7년차는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물량)의 수입량은 무관세 적용</li> <li>* 1차년도 187,547톤(93,774톤), 2차년도 234,434톤(146,521톤), 3차년도 281,321톤(210,990톤), 4차년도 328,207톤(287,181톤), 5차년도 375,094톤, 6차년도 393,849톤, 7차년도 412,603톤</li> <li>※ 괄호안은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기준</li> </ul>
전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옥수수전분(기준세율 226%) : 15년 관세철폐, 15년간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, 14년간 TRQ 제공(1차년도 10,000톤, 이후 매년 복리3% 증량)</li> <li>○ 덱스트린(변성전분)(기준세율 385.7%) : 12년간 관세철폐, 12년간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, 11년간 TRQ 적용(1차년도 14,000톤, 이후 매년 복리3% 증량)</li> <li>○ 감자전분(기준세율 455%), 매니옥전분(기준세율 455%), 고구마전분(기준세율 241.2%), 기타전분(기준세율 800.3%) : 15년간 관세철폐, 15년간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</li> <li>* 상기 4개 품목에 대해서는 15년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기준 내 일부 물량에 대해 무관세 적용</li> <li>- 1차년도 0.5톤, 이후 매년 0.5톤씩 증량</li> </ul>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5년 또는 10년 철폐, 동 기간 중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,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물량 내 무관세 적용 물량 설정(각 1천톤 미만)</li> <li>- 15년 철폐 및 동 기간 중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: 팥(기준세율 420.8%), 녹두(607.5%), 메밀(256.1%), 기타곡물(800.3%)·기타 가공곡물(800.3%), 발효주정(270%)</li> <li>- 10년 철폐 및 동 기간 중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: 고구마(기준세율 385%), 기타서류(385%)</li> </ul>

## 나. 육 류

품 목	협 상 결 과
쇠고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도체와 이분도체(냉장 및 냉동), 부분육(냉장 및 냉동)(기준세율 40%) : 15년 관세 철폐, 동 기간 중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물량 : 27만톤(1년차) → 35.4만톤(15년차, 매년 6천톤 증량)</li> <li>-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세율 : (1~5차년도) 40% → (6~10차년도) 30% → (11~15차년도) 24%</li> </ul> </li> <li>○ 육우(40%)와 식용설육(족·꼬리 등)(18%), 쇠고기 가공품(72%) 등 : 15년 관세 철폐</li> </ul>
돼지고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냉장 삼겹살과 기타(갈비, 목살 등)(기준세율 22.5%) : 10년 관세 철폐, 동 기간 중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물량 : 8,250톤(1차년도) → 13,938톤(10차년도, 매년 6% 증량)</li> <li>-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세율 : (1~5차년도) 22.5%, (6~10년차) 15.8%~11.3%로 점차 인하</li> </ul> </li> <li>○ 냉장육(도체와 이분도체, 전·후지)(기준세율 22.5%), 식용설육(기준세율 18~30%), 돼지고기 가공품(기준세율 27~30%) : 2014.1.1 관세철폐</li> <li>○ 냉동 기타 돼지고기(목살, 갈비살 등)(기준세율 25%) : 2016.1.1 관세철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11.2월 추가협상 결과</li> </ul> </li> <li>○ 소시지(기준세율 18%) : 5년 관세철폐</li> </ul>
닭고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선·냉장/중량 550g 이하 냉동 통닭(기준세율 18~20%), 냉동(가슴살, 날개)(기준세율 20%) : 12년 철폐</li> <li>○ 냉장육(기준세율 18%), 냉동(다리, 기타 절단육)(기준세율 20%), 닭고기 가공품(기준세율 30%) : 10년 철폐</li> </ul>
계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계란(기준세율 41.6%) : 15년 철폐</li> <li>○ 난황(기준세율 27%) : 12년 철폐</li> <li>○ 종란(기준세율 27%) : 10년 철폐</li> </ul>
기타 육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오리고기(기준세율 18~22.5%) : 냉장육 10년 철폐, 냉동육 12년 철폐</li> <li>○ 산양·면양고기(기준세율 22.5%) : 10년 철폐</li> <li>○ 칠면조고기(기준세율 18%) : 냉장육 10년 철폐, 냉동육 7년 철폐</li> <li>○ 녹용·녹각(기준세율 20%) : 15년 철폐</li> </ul>

## 다. 낙농품, 꿀, 사료

품 목	협 상 결 과
유제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탈지분유· 전지분유(기준세율 176%)· 연유(기준세율 89%) : 현행관세 - 기준관세율 유지 하 TRQ 제공(1차년도 5천톤, 이후 매년 복리3% 증량)</li> <li>○ 혼합분유(기준세율 36%) : 10년 관세 철폐</li> <li>○ 조제분유(기준세율 36, 40%) : 10년 관세 철폐, TRQ 적용(1차년도 700톤, 이후 매년 3%씩 증량)</li> <li>○ 유당(49.5%) : 5년 관세 철폐</li> </ul>
치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체다치즈(기준세율 36%) : 10년 관세 철폐 + TRQ 적용</li> <li>○ 체다 이외의 치즈(기준세율 36%) : 15년 관세 철폐 +TRQ 적용</li> <li>○ 치즈 품목에 대한 TRQ 물량 : 1차년도 7천톤, 이후 매년 3%씩 증량</li> </ul>
밀크와 크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0~15년 관세 철폐(기준세율 36%) - 지방함량 6% 이하 : 15년 철폐 - 기타 지방함량 6% 초과 : 12년 철폐 - 냉동크림 지방함량 6% 초과 : 10년 철폐</li> </ul>
버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0년 관세 철폐(기준세율 89%)</li> <li>○ 버터 품목에 대한 TRQ 물량 : 1차년도 200톤, 이후 매년 3% 증량</li> </ul>
유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식용과 사료용을 세분 분리(기준세율 49.5%) - 식용 : 협정 발효일에 증가세 20%로부터 시작해 10년간 철폐 * TRQ 적용 : 1차년도 물량 3천톤, 이후 매년 3%씩 증량</li> <li>- 사료용 : 즉시 철폐</li> </ul>
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천연꿀(기준세율 243%) : 기준세율 유지, TRQ 적용(1차년도 물량 200톤, 이후 매년 3% 증량)</li> <li>○ 인조꿀(기준세율 243%), 로열 젤리(기준세율 8%), 벌꿀조제품(기준세율 8%) : 10년 철폐</li> </ul>
사료품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료용 식물(기준세율 100.5%) : 15년 철폐, 14년간 TRQ 제공(1차년도 물량 20만톤, 이후 증량 없음)</li> <li>○ 보조사료(기준세율 50.6%) : 12년 철폐, 11년간 TRQ 제공(1차년도 5,500톤, 이후 매년 3% 증량)</li> <li>○ 사료용 옥수수, 대두(채유 및 박용) : 즉시 철폐</li> </ul>

## 라. 과일 · 과채류

품 목	협 상 결 과
오렌지 (기준세율 50%)	○ 계절관세 적용 - 감귤 성출하기(9~2월) : 기준세율(50%) 유지 * 동 기간 TRQ 몰량 수입 허용(1차년도 몰량 2,500톤, 이후 매년 3% 증량) - 감귤 비출하기(3~8월) : 관세 30%에서 시작하여 7년간 철폐
감귤류 (기준세율 144%) 키위 (기준세율 45%)	○ 15년 철폐
사과 (기준세율 45%)	○ 후지 계통 품종 : 20년 철폐,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23년 적용 ○ 기타 품종 : 10년 철폐,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10년 적용
배 (기준세율 45%)	○ 동양배 품종 : 20년 철폐 ○ 기타 품종 : 10년 철폐
포도 (기준세율 45%)	○ 성출하기(5월~10.15) : 17년 철폐 ○ 비출하기(10.16~4월) : 협정 발효일에 24%로 인하 후, 4년 철폐
복숭아·단감 (기준세율 45%)	○ 10년 철폐
딸기 (기준세율 45%)	○ 신선초분류 딸기(기준세율 45%) : 9년 철폐, 나무딸기(신선, 기준세율 45%) : 12년 철폐 ○ 냉동딸기(초분류 및 나무딸기, 기준세율 30%) : 5년 철폐 - 30% ○ 초분류딸기(일시저장처리, 기준세율 30%), 딸기주스(기준세율 50%) : 10년 철폐 ○ 초분류딸기(조제저장처리, 기준세율 45%) : 15년 철폐
토마토	○ 신선 및 냉장(기준세율 45%) : 7년 철폐 ○ 조제저장처리(기준세율 30%), 토마토 주스(기준세율 30%), 케첩(기준세율 8%), 소스(기준세율 45%) : 5년 철폐 ○ 토마토 페이스트(기준세율 5%) : 즉시 철폐
오이	○ 신선 및 냉장(기준세율 27%) : 즉시철폐 ○ 조제저장처리(기준세율 30%) : 5년 철폐
가지 (기준세율 27%)	○ 즉시 철폐
호박	○ 신선 및 냉장(기준세율 27%) : 즉시 철폐 ○ 건조호박(기준세율 30%) : 10년 철폐
수박 (기준세율 45%)	○ 12년 철폐
멜론 (참외 포함) (기준세율 45%)	○ 12년 철폐 - 껍질(기준세율 30%)은 즉시 철폐

## 마. 양념채소, 인삼, 특작

품 목	협 상 결 과
고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선고추, 건조고추, 고춧가루 등 핵심 품목(기준세율 270%) : 15년 철폐,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18년간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선고추, 건조고추, 고춧가루 등</li> </ul> </li> <li>○ 냉동고추(기준세율 27%) : 15년 철폐</li> </ul>
마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통마늘, 간마늘, 일시저장·건조 마늘 등 핵심품목(기준세율 360%) : 15년 철폐,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18년간 적용</li> <li>○ 냉동마늘(기준세율 27%) : 15년 철폐</li> <li>○ 초산조제·조제저장처리 마늘 : 10년 철폐</li> </ul>
양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선 및 건조 양파(기준세율 135%) : 15년 철폐, 농업 긴급수입 제한 조치 18년간 적용</li> <li>○ 냉동양파(기준세율 27%) : 12년 철폐</li> <li>○ 초산조제·저장처리 양파(기준세율 30%) : 10년 철폐</li> </ul>
생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선 생강(기준세율 377.3%) : 15년 철폐,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18년간 적용</li> <li>○ 설탕저장처리 생강(기준세율 30%) : 5년 철폐</li> </ul>
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건조 파(기준세율 30%) : 7년 철폐</li> <li>○ 조제저장처리 쪽파(기준세율 30%) : 5년 철폐</li> <li>○ 쪽파·기타파속채소(기준세율 27%) : 즉시 철폐</li> </ul>
인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삼 및 백삼 등 뿌리삼류(본삼, 미삼, 잡삼)(기준세율 222.8%) : 18년 철폐(동 기간 TRQ 제공:이행 1년차 5.7톤), 농업 긴급수입 제한조치 20년간 적용</li> <li>○ 홍삼(기준세율 754.3%) : 18년 철폐, 20년간 농업 긴급 수입제한 조치 적용</li> <li>○ 홍삼가공품(홍삼분, 타블렛, 엑스 등, 기준세율 754.3%) : 15년 철폐 및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18년간 적용</li> <li>○ 백삼분(기준세율 18%) : 15년 철폐</li> <li>○ 그 외 인삼품목 : 10년 철폐</li> <li>○ 인삼제제 의약품(30류) : 즉시철폐</li> </ul>
참깨, 참기름, 땅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5년 철폐, 세이프가드 18년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참깨·참기름(기준세율 630%)</li> <li>* 땅콩(230.5%)</li> </ul> </li> </ul>

## 바. 엽근채류

품 목	협 상 결 과
당근	○ 신선·냉장 : 기준세율 30% 5년 철폐 ○ 건조·일시저장처리 : 기준세율 30% 10년 철폐
무	○ 신선·냉장 : 기준세율 30% 10년 철폐 ○ 건조 : 기준세율 30%, 7년 철폐
배추	○ 신선·냉장 : 기준세율 27% 5년 철폐
채소류 혼합물, 순무, 양배추	○ 기준세율 27%, 즉시 철폐 * 건조 양배추(기준세율 30%)는 10년 철폐
기타 (기준세율 30%)	○ 연뿌리·기타식물(설탕저장처리) : 기준세율 30%, 5년 철폐 ○ 고구마줄기 : 기준세율 30%, 7년 철폐 ○ 토란줄기 : 기준세율 30%, 10년 철폐
채소 혼합주스 (기준세율 30%) 유아용퓨레콘 (기준세율 20%)	○ 5년 철폐

## 사. 가공식품

품 목	협 상 결 과
설탕 (기준세율 50%)	○ 15년차까지 30%로 균등 감축하고, 16년차에 관세 철폐 -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20년간 적용
대두유, 옥수수유	○ 대두유(기준세율 5.4%) : 조유는 10년, 정제유는 5년 철폐 ○ 옥수수유(기준세율 8%) : 조유는 5년, 기타는 6년 철폐
혼합조미료 (기준세율 45%)	○ 성분 중 고추·마늘·양파의 비중이 각각 20% 이상 또는 이를 합쳐서 40% 이상일 때 : 15년 철폐 ○ 그 외 : 5년 철폐
장류	○ 된장, 춘장(기준세율 8%) : 10년 철폐 ○ 간장(기준세율 8%), 고추장(기준세율 45%), 기타 장류(쌈장, 청국장) : 5년 철폐
과자류, 빵류, 기타식품류	○ 초코렛류(기준세율 8%), 파이&케이크(기준세율 8%) 등 : 5년 철폐 ○ 식빵, 건빵 등 빵류(기준세율 8%) : 10년 철폐 ○ 커피(기준세율 3%), 라면(기준세율 8%), 소주(기준세율 30%), 포도주(기준세율 15%) 등 : 즉시철폐

## 참고 우리측 주요 품목 TRQ 관리방식

품 목 명	TRQ 초기물량	TRQ 관리방식
넙치류 명 태 민 어	초기 1,530 미터톤 초기 4,000 미터톤 초기 1,000 미터톤	선착순 방식
탈전지분유, 연유 천연꿀	초기 5,000 미터톤 초기 200 미터톤	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권 공매 - 분기별(12, 3, 6, 9월)
버 터	초기 200 미터톤	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권 공매 - 매년 1월 공매
신선 또는 냉장감자 (침용, 종자용 제외) 수삼, 백삼	초기 3,000 미터톤 초기 5.7 미터톤	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권 공매
오 렌 지	초기 2,500 미터톤	(이행 1~10년)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권 공매 - 매년 8월 공매 (이행 11년~)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권 배분 - 최근 3년 수입 실적 기준 매년 8월 배분 ※ TRQ 신청 자격: 대외무역법상 수입업자로 등록된 인 또는 실제
보리(맥주맥, 시리얼용 제외)	초기 2,500 미터톤	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권 배분 - 매년 1월 첫째 영업일부터 서면신청에 따른 선착순에 기초하여 배분
맥아및맥주맥	초기 9,000 미터톤	- 1월중 총 신청물량 > 쿼타 물량 : 신청량에 따라 비례배분 - 1월중 총 신청물량 < 쿼타 물량 : 연도 말까지 선착순 기초 지속 배분
옥수수전분	초기 10,000 미터톤	- 공사 발급 허가는 발급일로부터 90일간 유효
덱스트린	초기 14,000 미터톤	- 미사용 허가는 90일 만료후 공사에 반납되며, 공사는 반납 후 45일 이내에 선착순에 기초하여 미사용 허가를 재배분
식용대두(IP)	초기 10,000 미터톤	대두가공업자연합체가 관세율할당 배분/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그 배분 물량에 대해 수입허가 자동 발급 - 수입권 서면 신청시 최소 7개월 이후 배달을 위하여 미국의 IP 대두를 구매하겠다는 의향서 수반 - 대두가공업자연합체는 수입 이전 연도의 4월 1일보다 늦지 않은 때에 TRQ 배분 시작 - 발급된 허가는 당해 쿼터 연도 전체에 걸쳐 유효 - 수입자 요청시 IP 대두 규격 요건* 충족을 증명하는 독립된 제3자 검증기관으로부터의 문서 수반 * IP대두 규격 요건 : 95%이상의 단일종 대두를 포함, 이물질은 1% 이하, 포대나 컨테이너로만 선적(별코 선적 불가)
식용유장 치 즈 조제분유	초기 3,000 미터톤 초기 7,000 미터톤 초기 700 미터톤	한국유가공협회 수입권 배분 - 과거 및 신규 수입자에게 허가제도를 통해 배분
사료용식물 (기타)	초기 20만 미터톤	한국단미사료협회, 한국사료협회 및 농협중앙회 수입권 배분 - 과거(24개월) 실적 및 당해 연도 수입 물량 기준 - 배분대상 : 등록된 배합사료제조업자, 등록된 단미사료 제조업자 및 양축농가
보조사료	초기 5,500 미터톤	한국단미사료협회, 한국대용유사료협회 수입권 배분 - 과거(24개월) 실적 및 당해 연도 수입 물량 기준

## 미측 농산물 양허협상 결과

- ▣ 대미 수출 농산물중 품목수 기준 58.7%, 대미수출액 기준 82.0%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함.
- ▣ 미측의 민감품목인 낙농품, 설탕, 쇠고기 등에 대해 10년 이상 관세철폐 또는 TRQ를 설정(양허제외품목 없음)
  - 미국 관세율표(HTSUS) Chapter 99의 subchapter 20에 한·미 FTA 하 미국의 TRQ 적용 대상 품목 반영

(단위 : %, 백만불)

Staging	품목수	비 중	대미수출액 (03-05 평균)	비 중	품 목
즉시	1,065	58.7	184.33	82.0	라면, 배, 조제식료품, 음료, 주류, 간장, 삼계탕, 포도주스(신선), 오렌지주스(냉동)
2년	10	0.6	0.20	0.1	자두(조제저장), 단백질계 물질
5년	401	22.1	4.56	2.0	아이스크림, 버섯
6년	1	0.1	-	0.0	호두(탈각)
7년	91	5.0	30.92	13.8	담배, 대두유(조유), 채소(조제저장)
10년	154	8.5	4.33	1.9	설탕, 차
15년	65	3.6	0.03	0.0	멥쌀, 쇠고기, 치즈
10년철폐, TRQ	26	1.4	0.27	0.1	낙농품(300톤)
총 계	1,813	100	224.64	100	



▣ 대미 수출 주요 품목 양허협상 결과

(단위: %, 불)

품 목 명	기준 관세율	미측 양허(年)	대미수출액(03~05) (단위 : 달러)
라면	6.4	0	30,930,741
제조담배	12.4	7	30,702,033
음료베이스	6.4	0	17,278,185
배	0.2	0	16,046,876
인삼음료	0.2	0	11,510,161
포도 가공품	6.0	0	8,932,609
빵	0.0	0	8,201,423
국수	6.4	0	7,890,461
기타 해조류	0.0	0	6,841,015
브랜드	0.0	0	5,286,372
육류스프	3.2	0	4,572,069
물	0.1	0	4,448,275
사과주	0.5	0	4,181,775
국수	0.0	0	3,954,953
빵	4.5	0	3,944,570
음료베이스	13.6	10	3,419,421
된장	6.4	0	2,872,300
수삼	0.0	0	2,606,026
감초엑스	5.6	0	2,508,484
김치	11.2	0	2,206,502
음료베이스	4.8	0	2,190,687
아이스크림	17.0	5	2,154,025
난초	0.0	0	2,128,267
멕아엑스	6.4	0	1,988,070
식물성 액즙	3.2	0	1,739,280
밤	0.0	0	1,614,623
된장	6.4	0	1,601,332
백삼정	1.0	0	1,430,476
맥주	0.0	0	1,372,075
곡류조제품	14.0	5	1,351,614
젤라틴	4.4	0	1,338,131
채소종자	0.0	0	1,066,926
밀	1.3	0	1,055,188
간장	3.0	0	1,017,675
식물성 한약재	0.0	0	1,014,182